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6. 14 선고 2016가단378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17. 5. 31.

판결 선고2017. 6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해시 E 임야 10,969m² 가운데 별지 도면 35, 36, 37, 38, 35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'ㄱ' 부분 8m² 지상 기와창고, 같은 도면 39, 40, 41, 42, 39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'ㄴ' 부분 31m² 지상 기와건물, 같은 도면 43, 44, 45, 46, 43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'ㄷ' 부분 72m² 지상 기와건물을 각 철거하고, 위 'ㄱ, ㄴ, ㄷ'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1. B, 피고2. C

자백간주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.

나. 피고3. D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.

판사노태헌

별지